

주류경제학에서 윤리성 논제 실종 문제의 근원*

이 종 철**

논문초록

근년에 세계경제를 위기 상황까지 가게 한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경제학의 현실성 문제와 윤리성 논제 실종 문제가 다시금 제기되었다. 주류경제학에서는 합리성과 효율성만을 경제 분석의 근간으로 하는데, 문제의 근원은 주류경제학의 패러다임을 대변하는 '경제인'의 인간상에서부터 찾아나갈 수 있다. 경제 분석은 경제주체로서의 '경제인'을 전제로 하는데, 윤리성 논제 부재의 경제학은 근원적으로 '경제인'의 무윤리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경제인'은 공리주의적 인간상의 전형이다. 주류경제학과 공리주의의 불가분리적 관계는 '경제인'의 인간상에 명료하게 드러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리주의와 결합된 경제학에서는 필연적으로 윤리성이 합리성으로 환원되고, 효율성으로 치환됨을 논증하였고,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 규범으로 삼게 됨을 보였다. 이와 같이 된 근원은 존재론적 자연주의에 뿌리를 둔 공리주의적 인간관과 이에 근거한 '선(good)' 개념의 정립에 있다. '오직 쾌락(행복)만이 선이고, 선이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쾌락(행복)이다'라고 하는 공리주의의 동일성 명제는 존재론적 자연주의에 뿌리를 둔, 공리주의 윤리사상의 근간인 것이다. 이것이 행위 규범이 없는 '경제인'의 근원이다. '공리의 원리'로 대표되는 공리주의 윤리사상은 결과주의를 행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행위의 동기나 의도는 윤리 판단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공리주의 인간관에 의하면 사람들은 본성대로 각자 자기 쾌락(행복)의 증진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그 본성대로 하고자 함이 바로 행위의 동기요 의도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본성을 지닌 공리주의적 인간은 선과 악을 규정하는 주체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로서 있는 것이다.

주제어: '경제인'의 무윤리성, 공리주의 윤리사상, 존재론적 자연주의, '공리의 원리', 효율성 최고가치

* 본 논문은 2013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한동대학교 경영경제학부 교수

2013년 5월 15일 접수, 6월 13일 최종수정, 6월 20일 게재확정

I. 서론

경제는 사회의 주축이 되는 양상이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생활물자를 얻기 위해 경제활동을 해 왔고, 경제는 사회형성의 중요한 동인이 되어 왔으며, 경제적 조건은 사회의 성격을 규정해 왔다. 생산, 분배 및 소비에서 인간이 주체가 되는 경제는 자연과 사회의 연결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는 자연이 기초가 되고 자연법을 내포하지만 그것으로 그쳐지는 것은 아니다. 사회는 자연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양상이 개현된다. 그것은 윤리성이다. 사회질서는 윤리에 기초하여 유지된다. 개인이나 조직의 비윤리적 행위는 경제의 파탄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아담 스미스는 본디 도덕론의 바탕 위에 경제학을 구축하였으나 지금 주류경제학에는 윤리성과 결부된 입론을 찾기 힘들다. 근년에 세계경제를 위기 상황까지 가게 한 미국발 금융위기의 근본원인이 인간의 탐욕이라는데 사회적 공감감이 이루어져 있으나 주류경제학은 이 근본문제를 다룰 개념 틀과 방법론이 결여된 채로 있는 것이다. 경제학의 현실성이 다시금 문제가 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주류경제학에서는 합리성과 효율성을 경제 분석의 근간으로 하며 윤리성 논제는 실종되었다. 여기서 윤리성 논제는 빈곤, 분배, 경제적 정의 등에 관련되는 논제를 뜻한다. 이와 같이 된 근원은 주류경제학의 패러다임(paradigm)을 대변하는 ‘경제인 (Homo Economicus)’의 인간상에서부터 찾아나갈 수 있다. 경제 분석은 경제주체로서의 ‘경제인’을 전제로 하는데, 윤리성 논제 부재의 경제학은 근원적으로 ‘경제인’의 무윤리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경제인’은 공리주의적 인간상의 전형이다. 주류경제학과 공리주의의 불가분리적 관계는 ‘경제인’의 인간상에 명료하게 드러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 주류경제학에서 윤리성 논제는 실종된 채 합리성과 효율성만이 경제 분석의 주축이 되고 연구의 주된 주제가 된 문제의 근원을 규명한다. 구체적으로는 공리주의와 결합된 경제학에서는 필연적으로 윤리성이 합리성으로 환원되고, 효율성으로 치환됨을 논증한다. 근원적이고 체계적인 논증을 위하여 먼저 공리주의 사상의 시원과 본질을 밝히고, 그것에 비추어 공리주의의 선과 윤리에 관한 언표들을 정합적으로 해석하고, 명제화 한다. 주류경제학과 공리주의 간의 관계를 명료하게 보기 위해 각각의 원형(archetype)과 태생적 관계에 주목한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경제에서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본래 의미의 효율성이 성서에 근거한 인간의 경제적 규범과 결부됨을 보인다.

II. 주류경제학과 공리주의

주류경제학과 공리주의 각각은 한 가지로 규정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주류경제학은 넓은 의미의 신고전학과 경제학, 공리주의는 벤담-밀-시즈윅(Bentham-Mill-Sidgwick)으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공리주의를 뜻한다. 경제학과 공리주의의 상호연관성은 이들 각각의 원형(archetype)들을 통하여 명료하게 밝힐 수 있다. 원형은 최초의 것, 혹은 본질적 특성을 가진 것으로서 그것으로부터 여러 가지 변형들이 생겨나되, 원형의 핵심 요소 혹은 본질적 특성은 변형들에 공유되고 유지되는 것이다. 원형은 특정 사상과 결부되어 있거나 사상 그 자체이다.

1. 공리주의 윤리사상

공리주의는 본래 윤리사상이다.¹⁾ 공리주의 사상은 벤담(Jeremy Bentham)의 공리의 원리(Principle of Utility)에서 그 원형의 핵심을 볼 수 있다. 공리의 원리란 “어떤 행위든지 그 결과에 영향 받는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쪽으로 결과가 나타날 것 같으면 도덕적으로 승인하고, 행복을 감소시키는 쪽이면 도덕적으로 부인하는(Bentham, 2000: 14)” 도덕적 판단 원리이다.²⁾ 행위에는 개인의 행위는 물론 정부의 조치나 정책 수행도 포함된다.

공리의 원리는 다음과 같은 벤담의 인간관·세계관에 기초한 것이다. “자연은 인류를 고통(pain)과 쾌락(pleasure)이라는 두 지배자의 치하에 두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지시하고, 무엇을 해야 할는지 결정케 하는 것은 오직 이 두 지배자 뿐이다. 이들의 절대적 권위에 의해 옳고 그름이 갈리고, 인과관계들이 규정되는 것이

1) 도덕과 윤리 두 용어는 좁은 의미로서 도덕은 개인의 도덕, 윤리는 사회 윤리의 뜻으로 사용하거나, 넓은 의미로서 윤리는 도덕적 판단의 근거라는 뜻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도덕, 윤리, 윤리규범, 규범 등의 용어를 뜻의 구분 없이 사용한다.

2) 인용은 다음 원문의 일부를 인용, 번역한 것임. “By the principle of utility is meant that principle which approves or disapproves of every action whatsoever according to the tendency it appears to have to augment or diminish the happiness of the party whose interest is in question: or, what is the same thing in other words to promote or to oppose that happiness. I say of every action whatsoever, and therefore not only of every action of a private individual, but of every measure of government .(Bentham, 2000: 14)”

다(Bentham, 2000: 14).”³⁾ 이 언명은 벤담의 공리주의의 서두요 기본전제이다.

공리의 원리는 행위의 주체뿐만 아니라 그 행위에 의해 결과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모든 사람들의 쾌락(행복)의 증진 여부를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옳고 그름의 척도(Bentham, 1891: 93)”라는 최대 행복의 원리(Greatest Happiness Principle)는 ‘행위는 쾌락(행복)을 증진시키는 정도에 비례하여 옳으며, 고통을 산출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그르다’라는 내용면에서는 공리의 원리와 다르지 않지만 규범적으로 더 적극적인 언표라고 볼 수 있다.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쾌락(행복)이 선이므로, ‘최대행복’은 최고선이 된다. 공리주의의 특성 중 하나로서 최대주의(maximalism)를 드는 소이가 여기에 있다. ‘최대다수’의 의미는 소극적으로는 공리의 원리에서 쾌락(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의 행위에 결과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범위와 관련되지만, 적극적으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의 쾌락(행복) 증진을 지향하여야 한다는 규범성을 내포한다.⁵⁾

2. 주류경제학과 공리주의

신고전학파의 형성은 1870년대 초의 한계혁명에서 비롯되었고, 그 원형은 제본스(William Stanley Jevons)의 효용극대화 모형으로 완성되었다. 이는 공리주의 사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은 태생적으로 공리주의 사상을 담고 있고, 공리주의는 일차적으로는 경제학을 통하여 그 사상이 학문적으로 구현되고, 이론화 된

3) 원문은 “Nature has placed mankind under the governance of two sovereign masters, pain and pleasure. It is for them alone to point out what we ought to do, as well as to determine what we shall do. On the one hand the standard of right and wrong, on the other the chain of causes and effects, are fastened to their throne. (Bentham, 2000: 14)”

4) 벤담의 기본전제와 ‘공리의 원리’에서는 행복(happiness), 쾌락(pleasure), 효용(utility) 등이 주된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다. 벤담의 용어로서 ‘효용’은 사물 또는 행위의 유용성으로서 쾌락(행복)을 산출하는 유용성이다. 쾌락과 행복은 거의 구별 없이 쓰인 용어인데, 행복의 크기는 쾌락의 크기에서 고통의 크기를 뺀 것으로 계측하였다. 공리주의에서 사물과 행위의 궁극적 의의는 오로지 쾌락(행복)의 산출에 있으므로, 사물과 행위의 가치는 오직 그 효용에 의해 규정된다. 공리주의와 결합된 신고전학파의 원형에서 효용가치설의 출현은 필연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쾌락과 행복을 구별하지 않고 묶어서 쾌락(행복)이라고 표현한다.

5) 원문은 “it is 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 that is the measure of right and wrong (Bentham, 1891: 93)”

것이다. 이상과 같은 상호연관성은 경제학이 전제로 하고 있는 ‘경제인’의 성격에서 명료하게 볼 수 있다.

인간의 행위를 포함하여 인간을 탐구 대상으로 하는 사회관련 학문은 이론적 사유에서 전제하는 인간상이 있기 마련이다. 사회를 형성하는 인간의 동물과 다른 특성은 합리성과 윤리성이다. 따라서 사회관련 학문은 합리적, 윤리적 인간을 전제로 한다.

신고전학과 경제학에서 ‘경제인’은 주어진 정보와 제약조건 하에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 하는 합리적인 경제주체이다. ‘경제인’이 합리성만을 드러내고, 윤리성이 실증된 것으로 나타난 것은 ‘경제인’이 공리주의적 인간상인데 기인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공리주의는 본래 윤리사상이다. 사상사적으로 공리주의는 자연주의 윤리사상의 근·현 대적 전형이다. 자연주의에서는 사실로부터 당위를 정립하는데, 인간의 본성의 ‘사실’로부터 윤리의 원리로서 ‘공리의 원리’를 정립하는 공리주의가 그 전형이다. 공리주의는 경제학에 들어와서 윤리성을 합리성의 결과로서 도출되는 효율성으로 치환한다.⁶⁾

주류경제학은 실증경제학(positive economics)과 규범경제학(normative economics)을 구분한다. 실증경제학은 인간 본성의 ‘사실’로서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인’을 행위의 주체로 하여 경제현상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 중심이다. 규범경제학에서는 ‘최대행복의 원리’에 결부된 효율성 개념을 가치판단의 주된 개념으로 하여 정책, 시장, 사회경제 체제 등을 판단한다. 주류경제학에서 주축은 실증경제학적 이론이다. 여기서 ‘경제인’의 자기 이익 추구는 궁극적으로는 자기 쾌락(행복)의 추구이다. 다시 말하면, ‘경제인’은 주어진 제약 하에서 자기 쾌락(행복)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하고 행하는 주체이다. 이와 같은 ‘경제인’의 목적 지향적 합리성은 공리주의적 합리성의 전형이다. 규범경제학에서는 개인들 전체로서의 사회 집단의 쾌락(행복)의 극대화, 경제학적 용어로 바꿔 말하면 ‘사회후생의 극대화’가 규범의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주어진 자원의 제약 하에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이루는 ‘경제의 효율성’이 중심 개념이다. 실증경제학과 규범경제학의 내적인 연관성은 모든 사람은 궁극적으로 오로지 쾌락(행복)만을 추구한다는 인간 본성의 ‘사실’에 인과관계를 귀속 시킬 뿐만 아니라, 옳고 그름의 규범을 귀속 시키는 공리주의적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주류경제학에서는 개인의 합리성과 경제의 효율성이 핵심 개념이 되었는데

6) 이에 대한 논증은 V장에서 보인다.

데, 이는 공리주의 윤리 사상이 경제학에 투영된 결과이다.

인간 본성의 ‘사실’로부터 인간 윤리의 원리를 도출하는 공리주의의 근원은 자연주의 윤리사상에 있다. 다음 장에서는 공리주의의 자연주의적 속성을 봄으로써, 공리주의적 윤리성의 본질과 공리주의와 결부된 경제학의 사상적 근원을 살펴본다.

III. 공리주의와 자연주의

공리주의는 자연주의의 한 부류이며, 근·현대 자연주의 사상의 주요 유형이다. 특히, 공리주의 윤리사상의 근원은 자연주의 윤리사상에 있다.

1. 자연주의 윤리사상

자연주의는 크게 존재론적 자연주의와 방법론적 자연주의로 나뉜다. 존재론적 자연주의(ontological naturalism)는 철학적 자연주의(metaphysical naturalism)라고도 하는데, 초월적·신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정신현상을 포함한 세계의 모든 현상과 그 변화의 근본원리가 자연(물질)에 있다고 보는 사상이다. 방법론적 자연주의(methodological naturalism)는 초자연적 실재의 존재 여부, 초자연적 현상의 실재 여부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현상 간의 인과관계를 인식하고, 설명, 예측함에 있어 초자연적 존재나 그 작용을 상정 않는 학문 방법론적 자연주의이다. 일반적으로 자연과학적 방법이 진실을 발견하고 참된 지식을 획득하는 효율적인 접근방법이라고 여기는 사조이다.

공리주의 윤리사상은 존재론적 자연주의에 근거한 자연주의 윤리사상과 맥을 같이 한다.⁷⁾ 자연주의 윤리사상의 원천은 고대 그리스 에피쿠로스학파(Epicurean school)와 퀴레네학파(Cyrenaic school)의 헤도니즘(hedonism)에서 찾는다. 헤도니즘은 쾌락주의로 번역되는데, 퀴레네학파는 감각적, 육신적 쾌락을 중시하고, 에피쿠로스학파는 정신적 행복을 중시하였다. 밀(John Stuart Mill)은 저급의 쾌락(lower-quality pleasures)과 고급의 쾌락(higher-quality pleasures)을 구분하였는데, 전자는 퀴레네학파의 쾌락, 후

7) 존재론적 자연주의는 고대 철학에서 세계관으로는 유물주의(materialism), 윤리 사상으로는 헤도니즘(hedonism, 쾌락주의)으로 태어난 것이다.

자는 에피쿠로스학파의 행복에 가깝다. 헤도니즘은 쾌락이 진정한, 유일한 선이요, 가치는 쾌락을 낳는 유용성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벤담의 효용 개념이 바로 이 가치 개념이다. 쾌락(행복)이 인간의 기본 동기이며, 궁극목적이므로, 쾌락(행복)추구는 인간의 권리이고, 결과적으로 쾌락(행복)을 낳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이다.⁸⁾ 즉, 자연주의적 윤리론에서 자기 자신의 쾌락(행복)을 추구하는 행위는 이중적으로 정당화된다. 본성에 따라 쾌락(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권리로서 정당하고, 또한 행위의 결과가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영향 받는 사람들의 쾌락(행복)을 증진시킨다면 윤리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이다.

자연주의 윤리사상의 특성은 사실로부터 당위(규범)를 도출한다는 데 있다. 이론적 사유에서 윤리의 문제는 ‘선’의 의미를 규정하는 문제와 ‘옳은 행위’를 규정하는 문제로 나뉜다. ‘옳은 행위’는 ‘선’을 이루는 행위로 규정한다면, 윤리론의 초점은 선을 규정하는 문제가 된다. 헤도니즘에서 ‘선’은 인간의 자연적 본성과 결부된다. 즉,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쾌락을 갈망하고 고통을 기피한다는 사실로부터 쾌락은 그 자체로 선이라고 규정한다. 이와 같은 자연주의 윤리사상의 특성이 벤담의 공리주의에 이어지고, 근대적으로 전개된 것이다.

2. 자연주의적 오류와 공리주의

공리주의의 ‘선’관념은 ‘사람이란 본성적으로 결국 쾌락(행복)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존재이므로, 쾌락(행복)은 유일한 선이다’라고 정리된다. 여기서 ‘쾌락(행복)이 유일한 선’이라고 하는 선에 관한 언표는 공리주의의 윤리사상의 두 가지 특성을 나타낸다. 첫째, ‘선’을 정의하되 오로지 인간 본성의 자연적 경험적 사실로서 ‘선’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선은 쾌락(행복) 이외에 다른 무엇이 아니다’라는 말은 ‘선은 경험적 사실로 나타나는 것 이외에 다른 무엇이 아니다’라는 의미이다. 쾌락(행복)을 이루는 것이 선이요, 결과적으로 쾌락(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옳은 행위라는 공리주의적 윤리 규정도, 오로지 자연적 경험적 사실에 의해서만 윤리를 정의하고, 윤리적 판단을 하는 원리를 나타낸다. 둘째, 오로지 인간에게 좋은 것으로서 선을 정의하는 것이다. ‘인간

8) 이 논문에서 쾌락과 행복을 따로 쓰지 않고 묶어서 쓰는 이유는 퀴레네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 벤담과 밀의 쾌락과 행복의 의미를 함께 담기 위함이다.

이 본성적으로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인 쾌락(행복)은 인간 자신에게 한없이 좋은 것이요, 궁극적으로 유일하게 좋은 것이며, 선이란 인간 자신에게 좋은 것 이외의 다른 무엇이 아니다'라고 단정하는 것이다.

영국의 철학자 무어(George E. Moore)는 사실로부터 규범을 도출하고, 사실 판단만으로 윤리 판단을 하는 자연주의 윤리론은 오류라고 지적하고, 이를 '자연주의적 오류(naturalistic fallacy)'라고 하였다(Moor, 1980). 자연주의적 오류의 전형적인 예가 공리주의 윤리론이다. 공리주의에서 윤리 규범을 정립하는 근원적 사실은 인간 본성의 '사실'이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쾌락(행복)을 갈망하고 추구한다는 이 근원적 '사실'로부터, '쾌락(행복)은 선이고, 결과적으로 쾌락(행복)을 증진시키는 행위는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윤리 규범을 정립하는 바, 윤리의 근거도 자연적 경험적 사실 이외에 어떤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요, 윤리 판단도 오로지 사실 판단에 의한 것으로 환원되는 구조이다.⁹⁾

공리주의 윤리론에서 자연주의적 오류는 필연적이다. 존재론적 자연주의에 바탕을 둔 자연주의 윤리론에서는 자연적 속성과 분리된 독자적인 도덕적 속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도덕관념은 자연적 속성으로 환원되며, 윤리 판단은 경험적 자연적 속성만을 내포하는 사실 판단으로 치환된다. 자연주의 윤리론과 궤를 같이 하는 공리주의에서는 필연적으로 선을 경험적 자연적 속성으로 정의하게 되므로 무어의 '자연주의적 오류'를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무어의 '자연주의적 오류' 논변은 '쾌락'과 같은 자연적 속성은 '선'과 같은 비자연적 속성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며, 비자연적 속성이 내포되는 윤리 판단의 명제는 경험적, 자연적 속성만을 포함하는 사실 판단의 명제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다'

9) 무어에 의하면, '자연주의적 오류'에서 '오류'의 근원은 정의할 수 없는 '선'을 정의하는 데 있고, 이 오류가 '자연주의적 오류'인 것은 선을 오직 경험적인 자연적 속성으로서 정의하는 데 있다. 어떤 것이 정의 가능하라면, 그것은 여러 요소들로 구성되거나 여러 속성들을 지니거나 여러 양상들이 나타나는 복합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예를 들어 '노랑'은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는 것이 아닌 단순한 것으로서, 정의될 수 없는 것이다. '선'도 이와 같은 단순한 것으로서, 정의될 수 없고, 오직 '선'을 속성으로 하는 실재를 통하여 직관될 수 있을 뿐이다. '선' 자체는 다른 속성으로 환원되거나 치환될 수 없는 독자적인 것이다. '선'은 '선'일 뿐이다. 무어에 따르면, '선'을 '쾌락(행복)'이라고 정의하는 공리주의는 '선'을 다른 속성인 쾌락(행복)으로 치환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며, 쾌락(행복)이라는 오직 경험적인 자연적 속성으로서 선을 정의함으로써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한 것이다(Moor, 1959: 7).

라는 사실로부터 ‘~이어야 한다’는 윤리의 원리가 도출될 수는 없다는 뜻이다.

공리주의에 대한 ‘자연주의적 오류’ 비판의 의의는 공리주의 윤리사상이 윤리론, 즉, 내적 정합성과 체계를 갖춘 윤리론이 되지 못함을 드러내는 단초라는데 있다.

IV. 윤리론으로서의 공리주의 본질에 대한 비판적 이해

‘공리의 원리’ 또는 ‘최대행복의 원리’로 대표되는 공리주의 윤리론에 대한 비판은 두 가지로 제기될 수 있다. 첫째는 공리주의 윤리성이 규범으로서의 본질을 지니고 있는가를 묻는 본질에 대한 비판이고, 둘째는 공리주의 윤리론이 내적인 정합성을 갖추고 있느냐를 묻는 정합성에 대한 비판이다. 규범의 본질 문제는 거대담론적 주제가지만 윤리 규범의 판단 대상으로 좁혀 구체화 하면, 행위의 결과를 판단 대상으로 하는 공리주의 윤리론과 행위의 의도, 동기를 판단 대상으로 하는 칸트의 윤리론으로 나눌 수 있다. 칸트의 윤리는 행위를 이끌거나 지도하는 규범성을 지니는 데 반하여, 공리주의의 윤리성은 이와 같은 행위 지도의 규범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본 논문에서는 공리주의 윤리론의 내적 정합성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룸으로써 공리주의 윤리론이 결과주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필연성을 규명하고, 따라서 행위 규범성을 갖추지 못하게 됨을 논증한다. 행위 규범성의 최소 조건은 자기 자신의 이익의 최대화를 추구하는 행위 주체가 그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는 쪽으로 행위하지 않고, 어느 정도 행위를 조절하는 것이다. 체계적인 윤리론에서 행위 규범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 규범이 도출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행위 규범을 준수할 내적 동기가 있음을 보여야 한다.

먼저 공리주의 윤리론은 내적 정합성이 없는,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윤리론임을 보인다. 그리고 윤리론으로서의 공리주의의 본질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공리주의의 내적 정합성을 구축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을 병행한다. 이를 위하여 공리주의 사상이 본격적으로 이론화된 경제학의 전개과정과 결과, 공리주의 사상이 본격적으로 적용된 법제도 수립의 원리 등에 비추어 현실성 있는 추론을 하고 공리주의의 언표들을 정합적으로 해석하면서, 공리주의의 특성이 나타나는 필연성을 도출한다.

1. 공리주의 윤리론의 난점

비자연적 속성과 자연적 속성이 엄연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구별하지 않고 치환하는 자연주의적 오류는 공리주의 윤리론에서 불가피한 난점을 야기 시킨다. 형식면에서는 논리의 비약으로, 내용면에서는 역설과 몰규범성으로 나타난다.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공리주의 윤리론에는 두 개의 끊어진 고리가 있는데, 하나는 형식논리적 비약으로 드러나고, 다른 하나는 내용적 역설로 현시된다.

형식논리적 비약은 선에 대한 정의에 내재되어 있다.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쾌락(행복)만을 갈망하고 추구하므로, 쾌락(행복)은 유일한 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인데, 공리주의에서는 왜 이와 같은 논리적 비약이 남겨질 수밖에 없었겠는가?

논리적 비약 없이 결론으로서 ‘쾌락(행복)이 유일한 선’임을 도출하자면, 전제로서 ‘선’을 규정해 놓아야 한다. 존재론적 자연주의 입장에서는 전제에서 규정되는 ‘선’은 경험적 관찰이 가능한 사실에 의거한 것이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조건 하에 형식논리상 결론에 정합적인 전제를 취하여 삼단논법 형식으로 체계화 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대전제]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그것이 선이다.

[소전제] 모든 사람은 오직 쾌락(행복)만을 추구한다.

[결론] 그러므로 쾌락(행복)만이 유일한 선이다.

‘선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로 그것이다’라고 규정한 [대전제]에 의해 이 체계 내에서 [결론]을 도출하는데 논리적 비약의 문제는 불식될 수 있겠으나, 내용상으로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된다. [대전제]는 이 체계에서 [결론]을 내용상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든다. 이는 ‘선한 것’을 X라고 바꿔 놓고 보면 분명해진다.

[대전제1]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그것이 X이다.

[소전제1] 모든 사람은 오직 쾌락(행복)만을 추구한다.

[결론1] 그러므로 쾌락(행복)만이 유일한 X이다.

X가 ‘악’이라고 하면, [결론1]은 ‘쾌락(행복)은 악이다’라고 도출되며, 이것도 이 체계

내에서는 논리적 하자 없이 도출되는 참인 결론이 된다. 이로 보건데,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사전에 인지하고 있지 않는 한, [대전제]에서는 단지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그것’을 ‘선’이라고 이름 지은 것이 되고, 이로부터 도출되는 [결론]에서 ‘쾌락(행복)이 ‘선’이다’는 ‘쾌락(행복)은 ‘선’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쾌락(행복)의 이름이 ‘선’이라고 도출된 것 이외의 다른 내용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존재론적 자연주의의 바탕 위에 있는 공리주의에서는 선이 경험적, 자연적 사실과 괴리된 그 무엇일 수 없으며, 선이 무엇인지에 대한 경험적 사실적 근거인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것’ 이외의 근거를 가질 수 없다. 이와 같이 논리적 비약의 문제를 없이 하기 위한 전제의 도입은 ‘쾌락(행복)이 선이다’라는 결론을 ‘쾌락(행복)을 ‘선’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므로, 전제의 도입 없이, 논리적 비약이 있을 수 밖에 없는 ‘모든 사람이 오직 쾌락(행복)을 추구하므로 쾌락(행복)은 유일한 선이다’는 명제를 논증 없는 기본명제로 정립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러면 기본명제가 단지 쾌락(행복)에 ‘선’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2. ‘선과 쾌락(행복)의 동일성’의 의미 해석

선에 관한 공리주의의 기본명제는 ‘쾌락(행복)은 선이요, 선은 쾌락(행복)이다’라는 선과 쾌락(행복)의 동일성 명제이다. 선과 쾌락(행복)의 동일성은 선을 규정하는 근거를 ‘모든 사람들에 의해 추구된다’는 것과 ‘사람들이 결국 추구하는 것은 오로지 쾌락(행복)뿐이다’라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근거도 갖지 않는 공리주의적 인식, 즉, 존재론적 자연주의에 바탕을 둔 인식의 필연적 결과이다. 앞선 의미 물음은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물음이 된다. ‘선과 쾌락(행복)의 동일성이 동어반복적인 것이 아니라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인가?’

첫째, 공리주의의 동일성 명제는 인간이 선·악을 규정하고,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임을 선언한다. 선이란 다른 무엇이 아니고 인간 자신에게 좋은 것인 쾌락(행복)일 뿐이라는 규정이며, 어떤 사물이나 사태가 인간에게 쾌락(행복)을 결과하는 것이면 선한 것이고, 인간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쾌락(행복)을 증진시키는 데로 이어진다면 윤리적으로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둘째, 동일성 명제가 동어반복적이 아니라면, 선과 쾌락(행복)은 각기 다른 의미 근원을 가져야 한다. 우선 선의 의미 근원으로서 가능한 두 가지는 ‘옳음’과 ‘좋은’이다. 공리주의에서는 선한 것을 모든 인간이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이요, 이는 ‘인간에게 좋은 것’이라고 규정한다. 즉, 선의 의미 근원을 ‘좋은’에서 찾는다. 동일성 명제는 ‘인간에게 좋은 것은 오로지 쾌락(행복) 뿐이다’라는 뜻이며, 이는 인간에게 좋은 것으로서의 쾌락(행복)의 배타적 유일성을 뜻한다. 선의 의미 근원이 ‘좋은’에 있다면, 쾌락(행복)의 의미 근원은 이와 달라야 한다. 그런데 특히 행복의 뜻을 한정하지 않으면, 행복이란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관념적으로 폭넓게 해석될 수 있다. 그러면, 동일성 명제는 다시 동어반복적이 된다. 따라서 동일성 명제는 쾌락(행복)이 단지 인간이 좋아하고, 인간에게 좋은 것이라는 관념적인 ‘좋은’이 아닌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쾌락(행복)을 지칭함을 드러낸다. 즉, 공리주의에서의 행복이란 심리적, 정신적으로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쾌락(행복)을 뜻하는데, 존재론적 자연주의에서 심리적, 정신적 현상은 자연적(물질적) 작용이므로, 쾌락(행복)은 자연적(물질적) 작용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¹⁰⁾

셋째, 공리주의의 동일성 명제는 선을 규정하는 주체인 인간과 이 규정에 의해 판단을 받는 객체인 인간의 분리를 예견케 한다. ‘선은 쾌락(행복)이다’라고 선을 규정함은 윤리 규범의 근거로서 의의가 있는 것인데, 윤리는 근본적으로 인간관계의 규범이므로 이와 같은 선의 규정이 인간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를 규명하여야 한다. 우선 ‘선은 쾌락(행복)’이라고 규정하는 주체는 쾌락(행복)을 추구하는 행위의 주체인 인간인데, 이 규정에 의해 선·악의 판단의 대상이 되는 객체도 결국은 인간이 되어 이 동일성 명제는 쾌락(행복)의 산출과 향유(소비)관계로서 인간관계가 맺어짐을 예견케 한다. 여기서 선·악의 판단 대상이 결국 인간이 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

10) 일반용어로서의 ‘행복’은 공리주의적 행복뿐만 아니라, 기독교적 ‘복’, ‘지복’의 뜻도 담을 수 있다. 본문의 둘째 해석이 의미하는 바는 존재론적 자연주의에 뿌리를 둔 벤담과 밀의 쾌락(행복)은 하나님께서 근원이신 성서의 ‘복’과 본질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선’에 관해서도 인간 중심의 선 규정과 하나님 중심의 선 규정은 근본적으로 상이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복 추구’의 정당성이나 (선 규정에 근거한) 규범으로서의 ‘공리의 원리’(‘최대행복의 원리’)를 기독교적으로 해석하여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이는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와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리주의를 기독교적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지적해 주신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미이다. 자연적(물질적) 작용의 결과로서의 쾌락(행복)은 일차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소비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재화와 서비스 생산자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소비에 의해 결과적으로 쾌락(행복)이 얻어진다면, 그 재화 또는 서비스 생산자는 선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공리주의적으로 해석하자면, 생산과 소비의 경제활동은 궁극적으로는 쾌락(행복)의 산출과 향유(소비)를 위한 수단적 행위의 집합이고, 경제사회는 본질적으로 쾌락(행복)의 산출과 향유(소비)가 이루어지는 장이며, 경제주체들은 결국 쾌락(행복)의 산출자와 향유(소비)자의 관계로 맺어지고, 선·악 판단의 주체와 객체로서 서게 된다.¹¹⁾ ‘인간이 선하다’는 진술은 공리주의적으로는 ‘쾌락(행복) 추구의 대상(객체)으로서의 인간이 선하다, 쾌락(행복)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선하다’는 뜻이 될 것이다. 쾌락(행복)을 추구하고 그것이 유일한 선이라고 규정하는 행위주체인 인간의 입장에서는 타자를 포함한 모든 사물은 쾌락(행복)추구의 대상이요, 쾌락(행복)을 산출하는 객체가 되는 것이다. 동일성 명제는 이와 같이 선을 규정하는 주체인 인간과 이 규정에 의해 판단을 받는 객체인 인간을 일단 분리시키지만, 여기서 판단을 받는 객체도 또한 본성적으로 쾌락(행복)을 추구는 행위의 주체이므로 인간은 상호 간에 주체로서 판단하며 객체로서 판단을 받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리주의 윤리론에서 인간은 스스로 정한 선·악 규정에 의해 타자를 판단하고, 타자로부터 판단을 당하며, 자기 자신에 대한 선·악 판단은 배제하는 구조 안에 있게 되는 것이다.

넷째, 공리주의의 동일성명제는 자기 자신의 쾌락(행복)만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암묵적으로 선한 것이라고 규정한다. 쾌락(행복)만을 선이라고 규정하는 근거는 모든 인간이 본성적으로 궁극적으로 쾌락(행복)만을 추구한다는 ‘사실’에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간 본성에 대해 선함(좋은) 등의 판단을 하자면, 선함(좋은) 등이 인간 본성 자체와는 다른 근원에서 규정되어야 한다.¹²⁾ 그 근원의 단서는 “자연은 인류를 고통(pain)과 쾌락(pleasure)이라는 두 지배자의 치하에 두었다.(Bentham, 2000:

11) 엄밀히 말하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자는 쾌락(행복) 증진의 수단의 산출자가 된다. 이 맥락에서 경제사회를 본다면, 고대 사회의 노예, 중세봉건사회의 농노, 지주제 하의 소작농, 자본주의 사회의 임금 노동자는 쾌락(행복) 증진 수단의 주요 산출자가 된다. 공리주의에 기초하여 사회역사적으로 보면 인간의 선 관념은 모순적이다. 단적으로 고대 노예사회에서 쾌락(행복)의 근원적 산출자는 노예로서 선한 존재인데, 그는 또한 수단으로서 팔리는 상품과 같이 취급된 것이다.

12) ‘선’ 개념이 인간 본성의 ‘사실’과 다른 근원에서 정립된다면, 공리주의 윤리론의 논리상의 난점은 해소되는 셈이다.

14)”는 벤담의 언표에서 찾을 수 있다. 존재론적 자연주의에 뿌리를 둔 공리주의는 ‘자연의 인간 지배, 즉 자연의 인간 조성’을 전제로 함을 추론할 수 있다.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존재론적 자연주의의 이와 같은 인간관은 근대의 진화론(사회 진화론 및 자연 진화론)의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진화론은 인간을 포함한 자연 사물과 인간 사회가 발전적으로 진화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리 되어 간다는 사상이요, 믿음이다. 자연의 선택(natural selection)에 따라 인간 본성은 좋은 쪽으로 진화되어 온 결과라는 뜻이다.

3. 공리주의 윤리론의 결과주의와 보편주의

‘쾌락(행복)을 증진 시키는 행위가 정당하다’는 윤리 규범을 ‘인간은 본성적으로 쾌락(행복)의 증진을 추구한다’는 ‘사실’과 함해 놓으면, ‘인간이 본성에 따라 하는 행위는 윤리적으로 정당하다’는 뜻이 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의미의 윤리 규범이라고 할 수 없다. ‘윤리적 행위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규범에 따라 행하는 것’이라든지, ‘윤리는 행위 지도적 구실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논변에 의거하지 않더라도, ‘인간이 본성대로 행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행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그친다면, 공리주의 윤리 규범은 그야말로 몰규범적이 된다. 이러한 결과는 오로지 인간 본성의 ‘사실’로부터 윤리 규범을 도출한 데 수반된 것이다.

이와 같은 근원적 성격의 공리주의 윤리사상은 필연적으로 결과주의(consequentialism)와 보편주의(universalism)를 취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규범성을 확보하게 된다. 결과주의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그 행위의 결과로서 쾌락(행복)이 증진되는가의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다. 행위의 의도는 윤리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보편주의는 행위의 결과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쾌락(행복)이 절대적으로 증진되는가 여부, 즉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그 고통의 크기를 뺀 쾌락(행복)의 순 증가가 있었는가 여부로서 판단하는 것이다. 결과주의와 보편주의를 합하여 ‘보편적 결과주의’라고 부를 수 있겠다. 결과주의는 인간이 본성대로 쾌락(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그 자체로서 윤리 규범을 만족시킨다는 몰규범성을 탈피할 수 있게 한다. 그 대신 인간 행위의 동기, 의도 등을 판단하는 것을 중지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공리주의 윤리 판단은 인간 행위의 동기, 의도에 대한 윤리 판단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당연한 귀결이다. 왜냐하면, 인

간 행위의 동기(의도)는 모두 쾌락(행복) 추구에 있다는 것이 공리주의의 기본명제이기 때문이다. 쾌락(행복)을 추구하는 행위 주체로서 인간에 대한 선·악 판단이나 행위의 동기나 의도에 대한 윤리 판단은 의미 없는 것이며, 오로지 행위의 결과에 대한 판단만이 의미 있는 판단이 된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른 것은 공리주의의 동일성 명제가 윤리적 의미를 갖기 위한 필연적 귀결인 셈이다. 보편주의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개인적 이기주의가 윤리적으로 정당하다는 몰규범성을 벗어나게 한다. 보편주의의 일차적인 의의는 자기 쾌락(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의 행위가 타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를 고려한다는 데 있다. 즉, 보편주의의 의의는 결과주의와 결합하여 행위를 판단하는데, 그 행위의 결과, 행위 주체인 개인의 쾌락(행복) 증진을 가져왔느냐를 판단요소로 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타자에게 고통(또는 쾌락(행복))을 초래하였느냐 여부도 또한 판단요소로 하여야 함에 있다.

결과주의와 보편주의는 동일성 명제에 내재된 논리적 비약의 문제를 불식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성 명제의 의미 물음에 의해 제기된 공리주의 윤리 규범의 근원적 몰규범성을 해소 시키는 구실을 한다.

4. 공리주의 윤리론의 역설

‘사실’로부터 규범을 도출하는 공리주의의 자연주의적 윤리론은 형식논리적 비약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상 역설적이다. 공리의 원리, 최대행복의 원리에는 인간 본성과 윤리 규범 간에 역설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공리주의적 인식은 모든 사람의 자연적 본성은 결국 자기 자신의 쾌락(행복)을 갈망하고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 ‘사실’로부터 ‘쾌락(행복)은 유일한 선’이라는 선 개념과 쾌락(행복)을 증진시키는 행위가 정당한 것이라는 윤리 규범이 정립되는 것이다. 그런데, ‘최대행복의 원리’에 내포된 행복이란 행위 주체 자신의 쾌락(행복)만을 지칭함이 아니다. 극단적으로 해석하자면, 쾌락(행복)을 추구하는 행위 주체가 자기 자신의 쾌락(행복)은 희생하더라도 최대다수의 쾌락(행복)이 증진되는 쪽으로 행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해석한다 해도, 본성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쾌락(행복)을 추구하는 주체가 윤리적으로는 자기 자신보다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행위의 윤리 규범이 그 정립의 근거가 되는 인간 본성과 배치된다는 점에

서 역설적이다. 이 역설적 관계는 인간 본성의 ‘사실’로부터 윤리 규범이 논리적 정합성을 갖춘 논증을 통하여 도출된 것이 아님을 드러낸다. 단지 ‘사실’을 근거로 규범을 정립한 것뿐이다. 실제로 공리주의에서는 공리의 원리(최대행복의 원리)를 ‘증명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증명이 불필요한’ 자명한 것으로 놓고 이를 시발점이 되는 근본 원리로 삼아 모든 윤리론을 전개한 것이다.

그러면 이 역설은 해소될 수 없는 것인가? 공리주의적인 인간 본성의 ‘사실’과 윤리 규범이 논증될 수 있는 관계는 아니지만, 상호 배치되지 않도록 해석될 수 있다.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이들은 모두 공리주의의 근원 사상에 정합적인 해석이다. 한 가지는 선 개념의 정립을 선 관념의 형성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인간 본성의 ‘사실’이 윤리 규범을 관통하도록 정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한 가지는 인간 본성에 따른 행위가 결과적으로 윤리 규범을 만족 시킨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먼저, 공리주의 사상의 근원으로 들어가 선 관념 형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근원 사상과 정합적임을 보일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공리주의는 사상적으로 존재론적 자연주의를 근원으로 한다. 존재론적 자연주의는 초월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정신현상을 포함한 세계의 모든 현상과 그 변화의 근본원리가 자연(물질)에 있고, 인간이 사실로서 경험 가능한 사물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며, 존재하는 사물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시공간적 자연세계에 사실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상의 공리주의에서 모든 명제는 사실 판단의 명제가 되어야 한다. 인간의 자연적 본성의 사실로부터 선을 정의하는 명제인, ‘모든 사람이 원하고 추구하는 것은 결국 쾌락(행복)뿐이므로 쾌락(행복)이 유일한 선이다’를 사실 판단의 명제로 풀어서 쓴다면 ‘각 개인이 자기 자신의 본성에 대한 자각과 타인들의 언행에 대한 인식 경험을 통하여 사람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쾌락(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로써 쾌락(행복)만이 보편적으로 좋은 것, 선한 것이라는 선 관념(idea)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쓸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보편적 선 관념이 개인들에게 형성되어 있게 된다면 개인들의 집합체인 사회집단에도 보편적인 선 관념이 있게 될 것이고, 따라서 행위 윤리 규범으로서의 ‘최대행복의 원리’도 소극적으로는 이해되고 적극적으로는 행위 규범으로서 받아들여 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선 개념의 정립을 선 관념의 형성으로 해석한다면, 행위 규범으로서의 ‘최대행복의 원리’는 존재론적 자연주의를 근원으로 하는 공

리주의 사상과 정합적으로 사실 판단의 명제로부터 도출되는 윤리 규범으로서 정립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보편적 선 관념 존재의 현실적 의의는 무엇인가? 공리주의적으로 추론해 보면, 각자 자기 자신의 쾌락(행복)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개인은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의 이익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이익 위주의 의사결정을 하겠지만, 자기 이익과의 관련성이 낮거나 불확실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 3자적 입장에서 보편적 선 관념과 결부된 ‘최대다수의 행복’의 원리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공공의 영역에서 입법에 대한 동의 여부, 정책에 대한 지지 여부 등의 문제에서 보편적 선 관념이 작용할 개연성이 클 것이다.

다음으로, 윤리 규범인 ‘최대행복의 원리’가 인간 본성의 ‘사실’에 부합되도록 정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역설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바꿔 표현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의 쾌락(행복)만을 추구하는 개인이 어떻게 모든 사람의 쾌락(행복) 증진을 목표로 하는 행위 규범에 동의할 수 있는가?’ 이 역설이 풀어지자면, 개인이 각자 자기 자신의 쾌락(행복) 추구라는 목적을 관철하면서, ‘최대행복의 원리’에 동의해야 하는 것이다. 가능하게는 ‘최대행복의 원리’를 개인의 행위 규범이 아닌 사회집단의 제도화 원리, 좁은 범위로는 입법의 원리, 국가 정책의 원리로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개인이 입법의 원리로서 ‘최대행복의 원리’에 동의하는 것은 역설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입법과 제도화를 통한 사회경제 질서의 형성과 유지가 개인이 자기 이익 추구 목표를 관철하는 데 근본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므로 누구나 동의할 수 있고, 이와 같이 개인들에게 유익한 보편적 사회조직을 뒷받침하는 입법과 제도화 원리로서 ‘최대행복의 원리’가 바탕이 되는 것은 개인들에게 받아들여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대행복의 원리’는 구체적으로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경제성장 촉진 정책, 보편적 사회복지제도 구축 등을 뒷받침하는 원리 원칙으로 작용할 수 있고, 법적 측면에서는 합리적 사법 판단의 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두 가지 해석을 종합하면, 각 개인은 본성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만, 또한 공동선을 추구하는 윤리 규범에 동의할 수 있는데, 이는 보편적 선 관념이 형성되고 공유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함이다.¹³⁾ 여기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본성을

13) 인간이 보편적 선 관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인지된 사실이다. 그렇지만 선 관념의 내용이 무엇이나, 선 관념이 선형적인 것인가, 경험적으로 형성된 것인가, 선 관념의 내용이 절대적인가, 상대적인가 등에 대한 논변은 다양하다. 공리주의 근원 사상에 부합하는 선 관념은 선은 쾌락(행복)이라

이기성이라고 하고, 공동체의 윤리 규범에 동의하는 성향을 윤리성이라고 한다면, 개인은 이기성과 함께 윤리성을 가진 존재라는 뜻이다. 개인에게 이기성과 윤리성이 병존한다는 이 종합된 해석의 현실성은 단편적으로는 개인과 사회의 현실을 설명하고 반영하는 학문들의 구조화된 특성과 전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학제간 통섭적으로 보면, 주류경제학에서는 개인들이 각자 자기이익의 극대화, 자기 효용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경제행위를 한다고 전제하는 등 공리주의의 인간 본성의 ‘사실’을 이론적 바탕으로 삼고 있으며, 법학계(법학 및 법조계)에서는 공리의 원리(최대행복의 원리)를 중요한 입법 및 사법적 판단의 원리로 삼는 등 공리주의의 윤리 규범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주류경제학에서 암묵적인 전제는 개인이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관철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질서가 형성되고 유지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입법, 사법 등 공공의 영역에서 공리의 원리를 취하는데 있어서도 개인들이 사적인 영역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공리주의적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형성된 법을 준수하고 제도적 규율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보편적 선 관념과 도덕적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 윤리적으로 정당한 행위가 되는 것이다.

공리주의 윤리론에 내재된 역설을 해소할 수 있는 또 다른 해석은 인간 본성에 따른 쾌락(행복) 추구 행위가 결과적으로 윤리 규범을 만족 시킨다고 하는 해석이다. 이 해석의 현실성은 공리주의에 바탕을 둔 규범경제학의 중심 개념과 핵심 명제에 대한 규범적 의미 추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주류경제학의 규범경제학 분야에서는 효율성 개념이 중심 개념이며,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first fundamental theorem of welfare economics)가 핵심 명제이다. 제1정리의 내용은 완전경쟁시장경제에서 경제주체들이 각자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합리적 경제행위를 한다면, 결과적으로 경제의 효율성이 달성된다는 것이다.¹⁴⁾ 여기서 경제의 효율적 상태가 근원적으로는 사회후생이 극대화된 상태를 뜻하는데서 알 수 있듯이, 효율성 개념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투영된 개념이다. ‘최대행복의 원리’라는 공리주의 윤리 규범에 비추어 제1정리를 해석하면, 모든 개인들이 각자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행위를 하면 시장 기능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사회후생의 극대화가 달성되는데, 이는 윤리 규

는 것이요, 그 선 관념은 경험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이라는 뜻이다.

14) ‘시장실패가 없다면’이라는 조건은 생략함.

범을 결과적으로 만족시키게 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의 쾌락(행복)을 추구하는 행위의 주체라는 ‘사실’로부터 ‘최대행복의 원리’라는 윤리 규범을 도출하는 공리주의가 행위에 대한 윤리 판단을 행위의 결과에 대한 판단으로 한다면, 모든 개인들의 자기 이익 추구행위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장을 통하여 공리주의 윤리론의 역설은 해소될 수 있다는 뜻이다.

5. 소결론: 공리주의 윤리론의 정합적 해석

‘사실’로부터 규범을 정립하는 공리주의 윤리론은 근본적으로 ‘사실’과 규범 간의 간극이 내재된 윤리론인데, 이는 한편으로는 형식논리상의 비약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내용상의 역설로 구체화 된다. 선을 규정하는 동일성 명제는 논리적 비약을 내포하는데, 이를 계기로 한 의미 물음은 공리주의 윤리 규범의 근원적인 ‘몰규범성’을 드러낸다. 결과주의와 보편주의는 이 ‘몰규범성’을 해소함으로써 공리주의 윤리 규범의 ‘규범성’을 지탱해 주는 것이다. 여기서 보편적 결과주의의 일차적인 함의는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행위 주체인 개인의 쾌락(행복) 증진을 가져 왔느냐는 것뿐만 아니라 남에게 고통(또는 쾌락(행복))을 초래하였느냐는 것도 판단요소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 윤리의 차원에서 단순하게 말하자면, 각 개인은 자기 자신의 쾌락(행복)을 추구하되 결과적으로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윤리 규범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결과주의적 윤리 판단의 의의는 무엇인가? 공리주의 윤리론의 정립 근거는 모든 사람은 궁극적으로 자기 쾌락(행복)의 증진만을 추구하는 행위를 한다는 ‘본성적 사실’이다. 이와 같은 행위 주체의 사전적 행위 의사결정에는 남의 고통에 대한 배려가 요소로서 작용하지 않는다. 단, 남에게 해를 끼친 경우의 처벌 또는 배상 제도가 실효성 있게 확립되어 있다면, 행위 주체는 예상 되는 행위 결과에 결부된 처벌 또는 배상 부담을 고려하여 사전에 행위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 바꿔 말하면, 보편적 결과주의에 입각한 공리주의 윤리 판단의 의의는 본성적으로 각자 자기 쾌락(행복)의 증진만을 추구하는 개인 행위 주체들이 결과적으로 상호간에 해를 끼칠 개연성을 낮추기 위해 처벌·배상 제도에 동의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결과주의가 행위 주체의 행위 의사결정의 규범적 구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주체인 인간의 ‘본성적 사실’에 어긋나지 않는 공리주의 윤리론의 특성으로서 나타나게 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공

리주의 윤리론에서 ‘사실’과 규범 간의 간극은 또한 윤리 규범과 그것의 정립근거인 인간본성 간의 역설적 괴리로 나타나는데, 이 역설은 두 가지 방식으로 풀릴 수 있다. 첫째는, 개인이 각자 자기 자신의 쾌락(행복) 추구라는 목적을 관찰하면서, ‘최대행복의 원리’에 동의하는 것이다. 여기서 공리주의적 개인은 법을 준수하고 제도적 규율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면 윤리적으로 정당한 행위를 하는 것이 된다. 둘째는, 인간 본성에 따른 쾌락(행복) 추구 행위가 결과적으로 윤리 규범을 만족 시킨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는 특히 주류 경제학의 규범경제학 분야의 효율성 개념과 제1정리를 ‘최대행복의 원리’에 비추어 의미 추론을 하는 것으로서 모든 개인들의 자기 이익 추구행위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장을 통하여 공리주의 윤리론의 역설은 해소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사실’로부터 윤리 규범을 정립하는데서 비롯되는 역설적 괴리와 논리적 비약은 결과주의와 보편주의에 의해 해소되는 셈이다. 이로써 각자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의 행위는 이중적으로 정당화 된다. 첫째는 개인의 자기 이익 추구 행위가 그 개인 자신의 쾌락(행복)을 증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윤리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전제는 한 개인의 행위 결과가 남에게 고통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¹⁵⁾ 이는 경제학 개념으로는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가 없다는 전제이다. 둘째는 개인들 각자의 자기 이익 추구 행위가 시장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최대행복의 원리’의 윤리 규범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정당화 된다는 것이다. 결과주의, 보편주의는 경제학에서 경제주체의 합리성, 경제의 효율성, 외부효과 등을 윤리 규범과 결부하여 해석 가능케 한다. 개인 차원의 선 관념, 윤리 규범과 아울러 형성되는 보편적 선 관념과 윤리 규범은 직접적으로는 ‘최대행복의 원리’를 지향하는 사회경제적 정책 행위에 대한 동의 가능성 및 평가의 기준문제와 결부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공리주의적 결과주의 및 보편주의를 개인이 그 자신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지는 윤리성과 결부시킬 수 있다면, 공리주의는 ‘결과책임’이라는 하나의 뚜렷한 윤리성을 담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결과책임주의는 행위 주체인 개인의 행위 결과 남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그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15) 엄격히 말하면, 행위 주체인 개인이 얻은 쾌락(행복)의 크기가 남이 겪는 고통의 크기보다 크다면 그 행위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군이 공리주의와 결부시키지 않더라도 결과책임주의는 그 자체로서 입법 및 사법적 판단의 유력한 규범적 근거가 될 수 있다.

공리주의적 결과주의와 보편주의로부터 ‘결과책임’의 윤리성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결과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과 ‘결과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닌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당하지 않으면,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규범으로 연결될 수는 있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정당한가 여부를 판단하는 윤리 판단에 내포된 것은 아니다. 만일 결과책임주의가 항상 공리주의적 결과주의와 보편주의에 부합한다면, 공리주의 윤리론에서 결과책임주의를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앞에서 결과주의와 보편주의는 개인 차원에서는 각자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의 행위가 이중적으로 정당화 되는 논거였다. 그 전체는 행위의 결과가 남에게 고통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었다. 공리주의와 관련하여 해석하자면, 결과책임주의는 바로 이에 대한 책임을 행위 주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규범이다. 그런데, 결과책임주의의 규범적 의의는 행위 주체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규범 이외에도 행위 주체의 행위 결정에 대한 지도적 규범적 구실을 할 수 있을 가능성에서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자기 자신의 쾌락(행복)을 추구하는 행위 주체가 남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사전에 행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규범이다. 여기서 남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행위를 조절함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쾌락(행복)을 추구하는 행위의 주체가 그 행위의 결과 필연적으로 남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이 인식 가능해야 한다. 자기 자신의 쾌락(행복)을 추구하는 행위의 결과로서 남에게 고통을 주게 되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의 쾌락(행복) 증진이 필연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남의 고통을 초래하는 경우이고, 이외는 다른 한 가지는 우연적으로 불확실하게 되는 경우이다. 사전적 행위 조절이 가능한 규범이 되는 경우는 전자일 뿐이다. 후자의 경우는 결과책임주의의 규범적 구실은 사후적인 책임 부담에 한정 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행위 주체가 자기 자신의 쾌락(행복) 증진만을 추구하여 한 행위가 우연히 남에게 해를 끼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자기 자신의 행위를 조절할 수는 없고, 사후적인 책임 부담만을 할 수 있을 뿐인데, 만일 책임부담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자기 쾌락(행복)의 증진만을 추구하는 주체는 책임부담을 하지 않게 될 것이므로, 공리주의적으로는 결과책임주의가 행위 주체의 행위 의사결정의 규범으로서 구실할 수는 없으며, 가능하다면 입법의 원리로서 동의될 수 있을 뿐이다. 결과책임주의가 입법의 원리로서 동의되자면,

공리주의적 개인의 입장에서는 사회구성원 상호 간에 우연한 피해를 발생케 한 사람에게 책임 부담케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각 개인의 쾌락(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 우연한 피해 발생은 보험적 상황과 유사한데, 공리주의적 개인이 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은 결과책임주의가 우연한 피해 발생에 대한 조치적 입법의 원리로서 동의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면, 사전적 행위 조절의 규범으로서의 결과책임주의는 공리주의 윤리론과 부합하는가? 결과주의와 보편주의로 귀결되는 공리주의 윤리론의 근거는 모든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궁극적으로 자기 쾌락(행복)의 증진만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는 공리주의적 행위 주체의 사전적 행위 의사결정에 있어서 남의 고통에 대한 사전적 배려나 사후적 책임 부담 등의 요소가 규범으로서 작용하지 않음을 뜻한다. 단, 남에게 해를 끼친 경우의 처벌 또는 배상 제도가 실효성 있게 확립되어 있다면, 행위 주체는 예상되는 행위 결과에 결부된 책임 부담(고통)을 고려하여 자기 쾌락(행복)을 추구하는 행위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분석적 추론의 결론은 결과책임주의는 공리주의 윤리론에서는 자기 자신의 쾌락(행복)만을 추구하는 주체의 행위 의사결정에 규범으로서 작용할 수 없고, 남에게 해를 끼친 책임을 부담케 하는 제도적 입법의 원리로서 작용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는 앞선 분석적 추론을 통하여 보인 결과주의 및 보편주의에 입각한 공리주의 윤리론의 함의와 같은 결론이다. 다시 말하면, 결과책임주의는 공리주의 윤리 규범에 결과주의와 보편주의 이상의 새로운 내용을 부가하지는 않는 것이다.

체계화 하여 말하면, 공리주의의 결과주의 및 보편주의는 개인의 차원에서는 남에게 해를 끼친 경우의 처벌·배상을 명시한 주어진 법제도 하에서 예상되는 행위 결과에 결부된 처벌·배상 부담을 고려하여 자기 자신의 쾌락(행복)을 극대화 하려는 행위 의사결정을 하게 됨을 뜻하고, 공공의 차원에서는 공리주의적 개인들이 ‘최대행복의 원리’에 입각한 법제도 또는 정책에 동의하게 됨을 의미한다. 공공의 차원에서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첫째, 해당 법제도나 정책이 본인의 이익에 부합되는가 여부 또는 본인의 이익에 부합되는가의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불확실성 하에서 본인에게 이익이 기대되는가 여부, 둘째, 자기 이익과 관련이 없는 입법 및 정책에 대해 제 3자적인 입장에서 보편적 선 관념에 의한 ‘최대행복의 원리’에 부합되는가 여부 등이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선과 쾌락(행복)의 동일성’을 토대로 정립한 공리주의 윤리(도덕)는 체계 내적인 정합성을 갖는 행위 규범으로서 도출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공리주의 윤리 원리인 ‘공리의 원리’(‘최대 행복의 원리’) 그 자체도 행위 규범성을 갖춘 것이 아님을 보였다. 공리주의 윤리론은 행위 규범 정립의 원리라기보다는 이미 존립되어 있는 사회규범, 법제도 등을 구성원 개인들이 준수하거나 거스르는 현상에 대한 설명의 원리로서 또는 법제도 형성의 원리로서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¹⁶⁾

다음 장에서는 이상과 같은 결과주의 및 보편주의를 특성으로 하는 공리주의가 경제학에서는 윤리성을 필연적으로 ‘경제인’의 합리성으로 환원시키고, 효율성으로 치환시킴을 보인다.

V. 합리성과 효율성으로 치환되는 윤리성

공리주의의 기초는 다음 세 가지로 명제로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다. 기본명제는 공리주의에서 논증 없이 언명된 것들을 명제화한 것으로, 수학에서의 공리(axiom)와 같은 성격이다. 공리주의(utilitarianism)의 ‘공리’와 수학의 ‘공리(axiom)’는 물론 다른 말이다.

[기본명제1] 인간은 본성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한다.

[기본명제2] 고통은 유일한 악(evil)이요, 쾌락은 유일한 선(good)이다.

[기본명제3] 궁극적으로 쾌락(행복)을 증진시키는 행위만이 윤리적으로 정당화 된다.

16) 부연하면, 공리주의 명제들을 연결하여 정합적으로 해석한 결과, 공리주의는 개인의 행위 규범이나, 의사결정 규범 등 현실적인 지도적 규범으로서의 의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는, 현상에 대한 인관론적 설명 요소로서의 의의인데, 어떤 윤리 규범이나 법제도, 또는 준수가 요구되는 정책에 대하여 시민들이 이를 따르느냐 어기느냐 여부가 관찰된다고 할 때, 이 현상적 사실을 설명하는 요소로서의 의의이다. 둘째는, 대안적인 법제도들이나, 정책들이나, 규범들이 있을 때, 이들에 대한 평가 판단의 하나의 기준으로서 의의이다. 만일 사회통념이 공리주의적 이라면, 즉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통념이라면, 여러 대안들 중 어떤 것이 이에 부응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의미 있는 판단일 것이다.

공리주의에서 [기본명제1]은 인간 본성의 사실이다. [기본명제2]는 “쾌락은 그 자체로서 선이다.... 그리고 고통은 그 자체로서 악이다... 선과 악이라는 말은 이 밖에는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는다.”는 벤담 (Bentham, 2000: 83)의 선·악에 관한 언명을 명제화한 것인데, 이는 인간 본성의 사실인 [기본명제1]에 근거하여 선과 악을 규정한 것이다. 즉, 만유의 중심에 인간을 놓고, 인간에게 좋고, 나쁜 것을 선과 악으로 규정한 것이다. [기본명제3]은 공리의 원리를 간략화한 것인데, [기본명제1], [기본명제2]를 바탕으로 정립된 윤리적 판단의 원리이다. 기본명제들이 논증의 체계를 갖는 것은 아니다. [기본명제2]와 같이 선과 악을 규정하는 것은 존재론적 자연주의에 기초한 공리주의가 인간의 본성적 ‘사실’이라고 인식하는 [기본명제1]에 근거하여 규정한 것이다. [기본명제2]는 각 개인에게 있어서 쾌락이 선이고, 고통이 악이듯이, 개인들의 집합이요 조직인 사회적으로도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기본명제3]으로 축약된 공리의 원리는 공리주의 윤리론의 핵심인데, 공리의 원리에서는 행위의 주체뿐만 아니라 그 행위에 의해 결과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모든 사람들의 쾌락(행복)의 증진 여부를 행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최대행복의 원리(Greatest Happiness Principle)’는 공리의 원리를 더욱 구체화한 것인데,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옳고 그름의 척도(Bentham, 1891: 93)”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사실’로부터 규범을 정립하는 공리주의적 열개에서는 [기본명제1]이 근본 바탕이 되고 그 위에 [기본명제2] 그리고 [기본명제3]이 정립되어 있지만, 논증을 통해 도출된 관계는 아니다. 그런데 기본명제들은 다음과 같은 연결 관계로 재해석될 수 있다. 만일 인간이 [기본명제1]처럼 그 본성대로 행위를 한 결과 항상 쾌락(행복)의 증진을 가져온다면, [기본명제3]에 의해 본성대로의 행위는 항상 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는 윤리적 행위란 선을 증진시키는 행위이고, 그 선이란 [기본명제2]에 의해 쾌락(행복)이라고 정의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쾌락(행복) 증진이라는 목적 추구 행위가 항상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 그 행위를 ‘합리적’ 행위라고 한다면, 행위의 합리성이 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할 가능성을 보게 된다. 다음 절에서 ‘경제인’의 합리성이 공리주의적 윤리성을 내포함을 보인다.

1. 합리성으로 환원되는 윤리성

합리성은, 베버(Max Weber)식으로 나누면, 가치 합리성과 도구적 합리성 두 가지로 분류된다.¹⁷⁾ 가치 합리성(axiological rationality)은 신념지향 합리성(belief-oriented rationality)이라고도 하는데, 설정된 목적 그 자체가 선한 것, 옳은 것이라는 신념으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는 행위를 합리적 행위라고 하는 것이다. 선택하는 수단이나 행위의 결과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지향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도구적 합리성은 목적-수단 합리성(means-end rationality)이라고도 하는데, 설정된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한다는 뜻에서의 합리성이다. 이 분류에 따르면, 공리주의적 합리성은 도구적 합리성인데, 인간 본성에 따라 설정되는 목적은 필연적으로 쾌락(행복)의 최대화가 된다. 즉, 공리주의적 합리성은 쾌락(행복)의 최대화를 유일무이한 목적으로 삼는 도구적 합리성인 것이다.

각자 자기 자신의 쾌락(행복)의 최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합리적 선택행위가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포함한 사람들의 쾌락(행복)을 증진시킨다면, 합리적 선택행위는 공리주의적 윤리성을 만족시키게 된다. 즉, 공리주의적 합리성은 윤리성을 내포하게 된다.

공리주의적 합리성의 전형은 ‘경제인’의 합리성이다. 신고전학파의 원형에서 ‘경제인’은 효용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합리적인 경제주체이다. 효용극대화 모형의 구축은 제본스에 의해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가 경제학 이론에 수용된 결과이다. 공리주의적 합리성이 경제학에 들어와서 ‘경제인’의 합리성으로 환치된 것이다. 경제학에서 효용은 주관적 만족도를 뜻하는데, 본질적으로는 쾌락(행복)의 크기와 같은 맥락의 용어로 쓰인다.

‘경제인’의 합리적 선택행위는 다음 두 가지 면에서 쾌락(행복)의 증진을 가져옴으로써 공리주의적 윤리성을 만족시킨다. 첫째, 행위자 자신의 쾌락(행복) 증진이다. 행위 결과 다른 사람에게 고통(피해)을 초래하는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위자 자신의 증진된 쾌락(행복)이 다른 사람들의 고통(피해)보다 큰 경우에 그 행위는 공리주의적으로 정당화 된다. 구체적으로는 피해를 보상하고도 쾌락(행복)의 순 증진이 있

17) 베버의 용어에 따르면 가치합리성(werttural)과 목적합리성(zweckrational)임. 목적합리성이 도구합리성과 같음.

는 경우이다. 둘째는, 다음 절에서 보이는 경제의 효율성 논변과 결부된다. 각자 자기 자신의 쾌락(행복)의 최대화를 추구하는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행위가 시장거래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사회 구성원 전체의 후생의 최대화(개인들의 쾌락(행복)의 합의 최대화)를 가져옴으로써 공리주의적 윤리성을 만족시킨다. 바꿔 말하면, 결과적으로 사회후생의 최대화를 가져오는, 즉 경제의 효율성이 달성되는 행위는 공리주의적으로 정당한 행위인데, 그 행위는 바로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행위인 것이므로,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행위는 공리주의적 윤리성에 부합된다는 뜻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다음 명제가 성립한다.

[명제1] 공리주의적 인간상인 ‘경제인’의 합리성은 윤리성을 내포하는 합리성이며, 그 합리성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는 윤리적으로 정당화 되지 않는다.

[명제2]은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의 효용극대화(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선택행위는 윤리적으로 정당하다는 것, 정부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들의 효용을 증진시키는 조처나 정책은 윤리적으로 정당하고, 만일 자유로운 시장을 통하여 개인들의 효용이 최대화 될 수 있다면,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윤리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음을 뜻한다. 즉, 사람의 효용 증진 여부만이 모든 윤리적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뜻이다.

윤리성이 합리성으로 환원되는 근본 원인은 모든 인간이 본성적으로, 궁극적으로 갈망하는 바는 오직 쾌락(행복)이며, 따라서 쾌락(행복)만이 유일한 선이라는, 선으로서의 쾌락(행복)의 유일성에 있다. 이에 근거한 윤리적 판단은 단순해진다. 행위의 궁극적 결과가 쾌락(행위)의 증진을 가져오는가에 대한 판단이 되는 것이다.

2. 효율성으로 치환되는 윤리성

효율성은 경제의 결과를 평가하는 기준이요, 개념이다. 이절에서는 공리주의적 윤리성은 경제의 결과와 관련해서는 효율성으로 치환됨을 보인다.

(1) 경제의 효율성

현대 주류경제학에서 경제의 효율성의 근원적 의미는 일정하게 주어진 자원의 제약 하에서 사회 전체의 후생, 공리주의적으로 말하면,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효용(쾌락, 행복)의 합이 최대로 크게 되도록 자원배분이 이루어짐을 뜻한다.

만일 사람들의 선호가 모두 같고, 효용의 크기를 잴 수 있다면, 사회구성원들의 효용의 총합으로서의 사회후생을 규정하고, 그것을 최대화하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정의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분석적 개념으로서 파레토 효율성(Pareto efficiency) 개념이 정립되었다. 개인들 간의 효용은 비교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로부터 비롯되는 난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파레토 개념은, 어느 누구도 효용이 감소되지 않으면서 어떤 한 사람이라도 효용이 증가되는 경우에만 사회후생이 절대적으로 증가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¹⁸⁾

이론적으로 이와 같은 파레토 효율적 상태는 유일하지 않고 다수가 있게 되는데, 파레토 개념은 효율성 조건을 만족하는 자원배분 상태들 간의 비교에는 적용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이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칼도(N. Kaldor)와 히스(J. R. Hicks)는 잠재적 보상기준(potential compensation criterion)을 제시하였다. 이 기준은 경제상태 X와 경제상태 Y가 사회후생 면에서 어느 쪽이 더 나은 상태인지 파레토 기준으로는 판별되지 않는 경우, 만일 경제상태 X에서 경제상태 Y로 이행할 때 효용 면에서 이득이 있는 사람들이 효용 면에서 손실을 보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고도 이득이 남게 된다면 경제상태 Y를 경제상태 X보다 사회후생 면에서 더 나은 상태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2) '경제인'의 합리성과 경제의 효율성

'경제인'의 합리성은 주어진 제약조건 하에서 자기이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성이다. 궁극적으로는 각자의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지만, 경제활동을 소비와 생산으로 양분하여 보면, 소비자는 효용극대화, 생산자는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경제인'

18) 즉, 경제상태가 X로부터 Y로 변할 때 사회구성원 가운데 그 누구의 효용도 감소하지 않고 적어도 어느 한 사람의 효용이라도 증가하게 되면 경제상태 Y는 경제상태 X에 비해 파레토 우월적(Pareto-superior)이라 하고 이와 같은 변화를 파레토 개선적 변화라고 한다. 파레토 효율적 상태는 파레토 개선이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의 합리성과 자유로운 완전경쟁시장을 이론적 전제로 한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정리1> 완전경쟁시장경제에서는 경제의 효율성이 달성된다.

본래의 정리에는 이론적 구비조건과 예외 사항으로서의 시장실패가 거론되지만, 중심 내용은 명확하다. 자유로운 경쟁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은 효율적이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완전경쟁시장경제를 전제로 할 때, 사회구성원 개인들, 즉, ‘경제인’ 개인들의 자기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 선택행위는 결과적으로 경제의 효율성을 달성케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 명제가 정립된다.

[명제2] ‘경제인’의 합리성은 경제의 효율성을 도출한다.

(3) 효율성으로 치환되는 윤리성

경제의 효율성이 공리주의적 윤리성을 내포한다는 명제는 앞선 [명제1]과 [명제2]로부터 도출된다. [명제2]가 의미하는 바는 ‘경제인’ 각각의 합리적인 선택행위는 필연적으로 경제의 효율성을 달성케 한다는 것이다. [명제1]은 ‘경제인’의 합리성에 부합하지 않는 경제행위는 윤리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음을 뜻한다. 그런데, ‘경제인’의 합리성은 필연적으로 경제의 효율성을 도출하므로, 이에 부합하지 않는 경제의 결과는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러므로 다음 명제가 성립된다.

[명제3] 경제의 효율성은 공리주의적 윤리성을 내포하며,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는 윤리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

[명제3]은 공리주의적으로 경제를 평가하는 제일 기준은 효율성이 된다는 의미이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정당하며,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뜻이 된다. 만일 경제의 형평성 증진이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면, 이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의미이고, 또한 경제의 효율성은 동태적(dynamics)으로는 경제의 성

장과 결부되므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경제의 효율성을 근원적 의미대로 사회후생의 최대화, 공리주의적으로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효용(쾌락, 행복)의 합이 최대로 크게 됨이라고 한다면, [명제3]은 공리주의의 ‘최대행복의 원리’와 상통한다. 주지하다시피 이 원리는 간단히 말하면,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은 선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풀이하자면, 개인의 선택행위나 정부의 정책행위가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행복을 줄수록 윤리적으로 정당성이 더 커지게 된다는 뜻이다.¹⁹⁾

3. 경제학에서 윤리성 요소 실종의 문제

[명제1]과 [명제3]은 공리주의와 결합된 경제학에서는 필연적으로 윤리성이 합리성과 효율성으로 치환됨을 의미한다. 굳이 구별해서 말하자면, 공리주의적 윤리성은 개인 행위의 차원에서는 합리성으로 치환되고([명제1]), 경제 전체의 차원에서는 효율성으로 치환됨을 뜻한다([명제3]). 주류경제학에서 합리성과 효율성 요소만이 경제 분석과 탐구 요소로서 상정되고, 윤리성 요소는 실종된 것은 이와 같이 해명된다.

경제학에서 윤리성 요소가 실종된 근본 원인은 윤리 규정문제의 복잡성과 객관성 논쟁으로 인한 문제 회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리주의와 결합된 경제학에서는 필연적으로 윤리성이 합리성·효율성으로 치환됨으로써 주류 경제학에서 윤리성 문제가 실종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합리성·효율성으로 윤리성이 치환된 것은 윤리적 정당성, 즉, ‘옳음’을 인간의 본성적 사실로부터 정립한 데 기인한다. 공리의 원리를 중심으로 하는 기본명제들을 종합하면, 모든 인간은 궁극적으로 쾌락(행복)만을 원하는 것이며, 따라서 쾌락(행복)만이 유일하게 좋은 것, 선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그것을 증진시키는 행위만이 윤리적으로 옳다는 것이다. 공리주의에서 쾌락(행복)만이 유일한 선이라는 함은 그것만이 절대적 선이요, 배타적 선이라는 뜻이다. 궁극적으로 그것을 저해하는 그 어떤 것도 윤리적으로

19) 공리주의의 역설, 즉, 개인들이 자기 자신의 쾌락(행복)을 추구하는 본성과 ‘최대행복의 원리’ 규범 간의 간극은 경제학 이론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메워지는데, 하나는 본문에서와 같이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를 통하여서, 다른 하나는 Harsanyi(1955)의 개인의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 도출을 통하여서이다.

로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요인, 즉, 형식적으로는 인간의 본성적 사실로부터 윤리 규범을 도출하는 것,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인간의 본성은 궁극적으로 쾌락(행복)만을 원하는 것이므로 쾌락(행복)만이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선이라고 간주하는 것 등으로 인하여 윤리성이 합리성·효율성으로 전적으로 치환된 것이다.

4. 함의 - 공리주의적 주류경제학에서의 규범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공리주의 윤리론은 개인의 행위 의사결정에 있어서 규범적 작용을 하지 못한다.²⁰⁾ 즉, 행위를 지도하거나 인도하는 규범성을 지니지 못한다. 행위의 결과에 대해 결과주의·보편주의적으로 판단을 할 뿐이다. 행위 규범은 오히려 합리성에 있다. ‘경제인’의 합리성으로 전형화 된 공리주의적 합리성은 목적 지향적 합리성이다. 공리주의의 특색 중 하나인 최대주의(maximalism)는 ‘최대행복의 원리’에서 비롯되었지만 경제학에 와서는 행위 주체의 이익의 극대화로 변모되어 나타났고, 이는 ‘경제인’의 행위 목적이 되었으며, 합리성은 개인 행위 주체의 이익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목적 지향 합리성이 된 것이다. ‘경제인’의 합리성은 경제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주류경제학의 패러다임의 핵심 중 하나가 되었지만, 본래 윤리사상인 공리주의의 맥락에서 해석하면, 쾌락(행복)의 극대화라는 목적을 추구하는 행위 주체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행위 하여야 한다는 규범성을 내포한다. ‘경제인’의 합리적 행위는 이중적으로 정당성 된다. 개인 차원에서는 개인적 ‘선’인 자기 자신의 쾌락(행복)의 증진을 가져온다는 것이요, 사회 차원에서는 개인들 각자의 자기 이익 추구 행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면 시장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경제의 효율성이 달성되는데, 이는 ‘최대행복의 원리’가 만족됨을 뜻하기 때문에 정당화 된다는 것이다.²¹⁾

20) 공리주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인간의 본성적 ‘사실’과 배치되는 ‘최대행복의 원리’는 현실적으로 개인 행위의 규범이 될 수 없다. 공리주의가 경제학에서 이론적으로 전개된 결과 윤리성이 효율성으로 치환되었음에 비추어 본다면, 공리주의적으로 보더라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윤리 규범으로서의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각자 자기 쾌락(행복)을 추구하는 개인들 간에 상호 이익이 되는 거래를 통하여 일정한 조건하에서 달성될 수 있는 이상적 상태, 이상적 목표를 보여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21) 공리주의 윤리론의 의의는 ‘최대행복의 원리’를 정립한 그 자체에 있다거나, ‘결과책임주의’와 상응

여기서 공리주의적 합리성은 목적 지향적 합리성이지만, 그 목적은 바로 행위 주체의 본성과 결부된 것이다. 따라서 합리성은 행위 주체가 본성적으로 추구하는 바를 달성케 하는 합리성인 바, 합리적 행위는 본성적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적 행위가 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공리주의에서 유일한 행위 규범이라 할 수 있는 합리성은 ‘오로지 쾌락(행복) 추구’라는 인간의 본성적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합리성이요, 행위 규범인 것이다. 이를 풀어쓰면, ‘모든 인간은 각자 자기 자신의 쾌락(행복)을 추구하는 본성대로 행위 하되, 쾌락(행복)을 극대화 하도록 합리적으로 행위 하여야 한다’라고 쓸 수 있을 것이다.

뒤집어 보면, 공리주의에서 자기 자신의 쾌락(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은 이중적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사실’로서 인간의 행위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데 대전제가 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행위에 대한 ‘윤리적 판단’ 근거로서 인간이 추구하는 쾌락(행복)자체가 유일한 선이므로 궁극적으로 쾌락(행복)을 낳는 행위만이 정당하다는 윤리적 규범 정립의 근거인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은 본성적으로 궁극적으로 쾌락(행복)을 추구함’은 사실 설명의 핵심요소요, 또한 윤리 규범 정립의 유일한 근거이므로 공리주의에서 ‘사실’과 ‘윤리 규범’은 ‘오로지 쾌락(행복)추구’라는 인간의 본성을 공통 핵심 요소로 하여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5. 기독교적 경제 규범과 결부된 ‘효율성’과 ‘합리성’

경제에서 효율성은 본래 주어진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자원이 낭비 없이 효과적으로 쓰여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경제학적으로는 비용최소화와 상응하는 개념인데, 공리주의적 주류경제학은 이를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상응하는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달성하는 자원배분으로 환치하였고, 이와 같은 의미의 효율성을 최고가치로서 이념화한 것이다. 동태적으로는 경제성장 제일주의로 나타나는 효율성 이념은 분배문제, 빈곤문제 등을 대처해야할 경제문제의 언저리에 둔다. 경제성장이 절대빈곤의 탈피에 필요조건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나, 분배적 정의가 결여된 성장의 도그마는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고, 불로소득의 창출을 가속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한다는데 있다고 하기 보다는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의 ‘합리성’을 정당한 것으로 규범화하고, ‘효율성’을 최고가치로 도출한데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성장 동력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성서에는 효율성이라는 용어가 명시되어 나오지는 않지만, 경제에서 본래 의미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효율적으로 해야 함’은 성서적 경제 규범의 하나로서 정립된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소명에서 비롯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 아담에게 주어진 제일의 소명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것이었다(창세기 1:26). 다스림은 풍요롭게 하기 위한 다스림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분하여 본다면, 다스림의 두 요소는 ‘관리함(managing)’과 ‘풍요롭게 함(flourishing)’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관리함은 풍요롭게 하기 위한 관리함이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풍요로움’ 하면 물질적 풍요로움, 즉, 기술을 발전시켜 자연을 개조하고, 경제를 성장시켜 잘살게 되는 것을 주로 떠올린다. 그러나 선진 경제국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물질적인 풍요로움만 좇는 물질주의는 인류가 진정으로 풍요로워지는데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다.

진정한 ‘풍요로움’을 향한 진보는 창조질서의 회복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는 샬롬(shalom)의 왕국이다. 영어로 peace라고 번역되는 샬롬은 헬라어로 된 신약에는 에이레네(eirene), 즉 평강이라고 기록된 말이다(Wolterstorff, 2004: 258). 샬롬은 풍성한 뜻을 지닌 말이다: 평화, 평강, 정의, 질서, 조화. 샬롬은 본래 하나님 창조의 완전함, 조화로움을 뜻한다.²²⁾

샬롬의 왕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을 축복하셨다.²³⁾ 이 땅에서 평화의 원천은 하나님의 의/ 정의가 이루어지는데 있다. 불의한 세상, 불공평과 억울함, 억눌림과 질곡이 있는 곳에는 진정한 평화가 가능하지 않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시편85:10).”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이사야 32:17).” 정의와 평화, 의와 샬롬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평화는 정의를 내포한다. 정의가 구현되지 않는 곳에 진정한

22)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 창조의 세계, 피조물들이 지으심을 받은 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다하고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기쁨의 세계, 완전한 진, 선, 미의 세계를 표현한다. 샬롬은 죄와 타락, 전쟁과 절고, 왜곡과 소외가 편만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화와 평강이다.

23) 히브리서 7장1~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나타난 살렘왕 멜기세덱은 의의 왕, 평강의 왕이었다. 살렘(salem)은 본래 완벽한 전체(complete fullness)를 뜻하기도 하는 말로서 샬롬과 근원적으로 다르지 않은 말이다.

한 평화는 없다. 평화를 외치는 것은 또한 정의를 외치는 것이다. 의(righteousness)는 정의(justice)에서 출발하지만, 정의 이상이다. 정의의 법, 정의의 질서가 지켜지되 그것 이상의 관대함, 사랑이다. 살림은 의가 나타나는 곳에 있다.

현존하는 왜곡된 사회에서 ‘풍요로움’을 향한 진보는 먼저 화평케 하는 일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런데 정의가 구현되지 않는 곳에서 진정한 평화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타락으로 인해 왜곡된 사회에서 사람에게 주시는 다스림의 소명은 이와 같이 ‘화평케 함’의 규범을 정립하게 한다.²⁴⁾

다스림의 한 요소로서의 ‘관리함’은 간략하게 말하면,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이용함을 뜻한다. 도널드 헤이(Hay, 1996)는 우리들의 개인적인 재능과 능력과 우리가 이용하는 자연자원은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것이라는 성서적 의식과 자료 연구를 통하여 여덟 가지 경제생활의 원칙을 도출하였다.²⁵⁾ 이는 자원(자연자원, 능력, 재능)을 단순히 각자의 삶을 위하여 사용함을 넘어서 관리하고 공동체 전체의 화평과 풍요로움을 증진할 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청지기직(stewardship) 사상으로부터 ‘자원의 낭비 없는 효과적 사용’이라는 경제의 효율성과 결부된 규범으로서 ‘효율적으로 해야 함’이 정립된다.

사람에게는 본래 아껴서 쓰고자 하는 ‘검약(frugality)’의 정신이 있다. 창조질서의 양상적 구조와 체계를 근거로 기독교 학문론을 전개한 헤르만 도예베르트(Herman Dooyeweerd)는 경제 양상의 핵심동인이 ‘검약인 것으로 확인하였다(Spier, 1979: 103-104).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한다’는 효율성 규범은 검약의 정신과 더불어 합리성을 요구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지혜와 이성의 능력은 자원을 낭비 없

24) ‘화평케 함’은 경제학을 포함한 사회관련 학문에서도 주요 과제가 되어야 할 당위성이 있음.

25) 헤이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원칙1) 인간은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피조된 자원들을 사용해야 하지만, 피조세계를 함부로 이용하거나 파괴해서는 안된다. (원칙2) 모든 사람은 자원과 재능의 청지기직을 수행할 소명을 갖고 있다. (원칙3) 청지기직은 자원의 처분을 결정할 책임을 포함한다. 각 사람은 자신의 청지기직에 대해 하나님께 결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원칙4) 인간은 일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원칙5) 일은 청지기직을 수행하는 수단이다. 인간은 일하면서 자원을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원칙6) 일은 인간이 자신의 재능에 대한 청지기로서, 그리고 자원의 공동 청지기로서 협력하는 사회적 활동이다. (원칙7) 각 사람은 의식주라고 하는 인류의 기본적 욕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함께 누릴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욕구는 일차적으로 생산적인 일에 의해 충족되어야 한다. (원칙8) 자원의 청지기라는 개인적 직분이 그 자원들에서 나온 모든 생산물을 소비할 권리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부자는 일을 통해 자활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의무를 갖고 있다. (Hay, 1996: 81-86)

이 효과적으로 사용함을 가능하게 한다. 인간 본성적인 검약과 함께 ‘효율성’ 달성에 ‘합리성’이 요구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해야 함’이 또 하나의 규범이 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재능과 이성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함이 하나의 규범임을 뜻한다.

이상과 같이 기독교적 경제 규범의 하나로서의 효율성 규범과 합리성 규범은 ‘다스림’의 소명에서 비롯된 것이요 ‘풍요롭게 함’을 지향하는 것이다.

VI. 결론

아더 홈즈(Arthur F. Holmes)는 그의 저서의 한국어판 서문에서 “약 반세기 전에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인간폐지』(The Abolition of Man)에서 도덕적 판단이 주관적 감정으로 축소되었고, 인식 작용을 통한 의미가 모두 거부되었다고 단언했다. 10년 후에 엘리자베스 앤드콕은 공리주의가 휩쓴 반세기 동안 도덕 법칙에 관한 언급이 모두 말살되었다고 항의했다(Holmes, 2004: 11).”고 공리주의의 영향력을 피력하였다.

공리주의는 주류경제학에 들어 와서 윤리성을 합리성으로 환원시키고, 효율성으로 치환시켰다. ‘경제인’은 공리주의적 인간 본성대로 궁극적으로 자기 쾌락(행복)의 극대화를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행위 주체인데, ‘경제인’의 합리성으로부터 도출되는 경제의 효율성은 공리주의적 윤리성을 내포함으로써 치환한다. 공리주의와 결합된 주류경제학에서는 필연적으로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규범으로 삼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된 근원은 존재론적 자연주의에 뿌리를 둔 공리주의적 인간관과 이에 근거한 ‘선(good)’ 개념의 정립에 있다. 존재론적 자연주의에서는 윤리 규범과 가치의 연원을 ‘ 좋음(good)’에 두고, ‘옳음’이란 ‘좋은’을 최대화 하는 것이라고 한다. ‘모든 인간은 본성에 따라 궁극적으로 오로지 쾌락(행복)만을 추구함’이 ‘사실’이고, 이 ‘사실’에 근거하여 ‘오직 쾌락(행복)만이 선(good)이고, 선이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쾌락(행복)이다’라고 하는 공리주의의 동일성 명제가 윤리성이 효율성으로 치환된 근원인 것이다. 행위 규범이 없는 ‘경제인’의 경제학의 귀결이다.²⁶⁾

26) 경제학과 관련하여서 이는, 효율성도 여러 가치기준의 하나로서 인식되어야지 최고의 가치기준, 배타적 기준이어서는 아니됨을 의미한다. 효율성 기준을 경제에 적용함에 있어서도, 효율성의 결과

주류경제학의 효율성 규범은 경제학의 태두인 아담 스미스의 윤리 규범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효율성 규범의 토대인 ‘공리의 원리’와 아담 스미스의 윤리 규범의 원리인 ‘공정한 관찰자 원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인간 본성 가운데 하나인 공감(sympathy)의 정서로부터 도출되는 공정한 관찰자 원리는, 피관찰자인 행위자 및 행위에 의해 영향 받는 피행위자의 사정과 처지를 잘 알고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관찰자(well-informed impartial spectator)가 행위자의 행위를 정당한(proper) 것으로 승인하거나 부당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기 이익을 우선적으로, 주로 추구하는 행위자라 할지라도 개인적 인간관계에서나 사회적으로나 존중 받기를 원하는데, 이는 관찰자의 승인 얻기를 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이를 위하여 행위를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규범이 있게 된다는 것이다. 공정한 관찰자는 개인의 내적 판단 주체이지만, 개인들의 내적 규범적 판단이 외화 되어 나타나는 것이 사회적 규범이요, 실정된 것이 법제도라고 한다면, 공정한 관찰자 원리는 사회적 규범의 유지 및 형성, 법제도 형성의 원리로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도덕(윤리)의 원리로서의 ‘공리의 원리’와 ‘공정한 관찰자 원리’ 간의 근본적 차이는 인간관, 인간의 본성에 관한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공리주의에서는 인간은 궁극적으로 오로지 쾌락(행복)만을 추구하는 존재로 보았다. 아담 스미스는 인간은 자기 자신을 돌보고 위하는 자애(self-love)의 정서적 충동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와 더불어 남의 처지에 공감하고 이해하는 본성, 남에게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본성, 양심이 있음을 보았다.

인간 본성을 근거로 선과 쾌락(행복)을 동일시하고, 이를 규범 정립의 유일한 기초로 삼는 공리주의에서는 암묵적으로 ‘인간이 본성적으로 쾌락(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좋은 것’임을, 즉 ‘인간의 본성은 선한 것’임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벤담의 언표를 근원적으로 보면, 인간은 자연의 지배하에 있는 존재인데, 자연은 인간을 오로지 쾌락(행복)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존재로 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쾌락(행복)만이 유일한 선이요, 선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함은 자연이 인간을 좋은 쪽으로 만들어 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아담 스미스는 인간

도출이 ‘경제인’, ‘완전경쟁시장’이라는 이념형의 인과귀속에 의한 것이므로 현실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요청된다. 일례로, 효율성을 최고가치화, 이념화함으로써 경제사회에서의 과당경쟁을 정당화한다거나 ‘시장논리’라는 것을 절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자기 자신을 돌보아 보존하고 위하는데서 비롯된 자애심(self-love)이 현존하는 인간들에게 탐욕, 지배욕, 명예욕 등으로 왜곡되어 나타남을 보았다.

존재론적 자연주의에 근거한 공리주의 윤리론은 필연적으로 결과주의를 행위 판단의 기준으로 삼게 된다. 이와 같은 공리주의 윤리론은 인간 행위의 동기와 의도를 윤리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칸트의 윤리론과 대척점에서 있다. 공리주의 인간관에 의하면 사람들은 본성대로 각자 자기 쾌락(행복)의 증진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그 본성대로 하고자 함이 바로 행위의 동기요 의도인 것이다. 즉, 공리주의에서는 인간 행위의 동기나 의도가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쾌락(행복)만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공리주의에서는 행위의 동기나 의도는 윤리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이와 같은 본성을 지닌 공리주의적 인간은 선과 악을 규정하는 주체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로서 있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이 공리주의 인간관에서 보는 대로 단일한 것이 아니고, 아담 스미스 등에 의해 설파된 대로 중첩되어 있는 것이라면, 공리주의적 인간은 양상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어느 한 면만을 부각시켜 단일화한, 베버의 개념으로는 이념형의 인간이라 할 수 있다. 실존하는 인간의 현실사회를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함에 있어서, 또한, 특히 이에 기초하여 경제사회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양상화된 이념형 인간인 '경제인'을 전제로 한 연구 결과를 직접 적용하는 데는 현실성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것이다.

종합하여 보면, 경제학의 윤리성 논제의 실종은 '경제인'의 무윤리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주류경제학은 분석 명제를 다루는데, 분석 명제는 주어에 이미 술어가 내포된 명제요, 경제학에서 주어는 '경제인'이기 때문이다.

경제에서 본래 의미의 '효율성'은 주어진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자원이 낭비 없이 효과적으로 쓰여짐을 뜻하는 것인데, '합리성'도 이와 결부된 것이다. 성서에 기초하여 이에 대해 고찰하면, 사람에게 주어진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소명이 '풍요롭게 함'을 지향하는 경제적 규범으로서 효율성 규범과 합리성 규범을 정립하게 함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김연정·정원규 (2003). “밑 『공리주의.』” 『철학사상』. 별책 제2권 9호. 서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 김완진·송현호·이재율 (1996). 『공리주의·개혁주의·자유주의』.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정원규 (2003). “벤담 『도덕 및 입법의 원리 서설』.” 『철학사상』. 별책 제2권 8호. 서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 소병철 (2008). 『합리성과 도덕성』. 서울: 서광사.
- Bentham, Jeremy (2000).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 Kitchner: Batoche Books.
- _____ (1891). *A Fragment on Government*. ed. by F.C. Montague, Oxford: Clarendon Press.
- Dooyeweerd, Herman (1995). *A New Critique of Theoretical Thought*. 김기찬 역. 『이론적 사유의 신비관 서론』.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사.
- Hare, John (2007). *God and Morality*. Malden: Blackwell Publishing.
- Harsanyi, John C. (1955). “Cardinal Welfare, Individualistic Ethics, and Interpersonal Comparisons of Utili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3. 309-21.
- Hay, Donald A. (1996). *Economics Today*. 전강수 외 공역. 『현대 경제학과 정치기 윤리』. 서울: IVP.
- Henrich, Dieter (1983). *Die Einheit der Wissenschaftslehre Max Weber*. 이상률 역. 『막스 베버의 사회과학 방법론』. 서울: 도서출판 이삭.
- Holmes, Arthur F. (2004). *Fact, Value, and God*, 이경직 역. 『사실, 가치, 하나님』. 서울: IVP.
- Kenny, Anthony (2008). *A New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volume 1: Ancient Philosophy*. 김성호 역. 『고대철학』. 서울: 서광사.
- Mill, John Stuart (2001). *Utilitarianism*. Kitchner: Batoche Books.
- Moore, George.E. (1959). *Principia Ethica*.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Pannenberg, Wolfhart (2008). *Grundlagen der Ethik*. 오성현 역. 『기독교윤리의 기초』. 서울: 한들출판사.
- Sen, Amartya K. (1977). “Rational Fools: A Critique of the Behavior Foundations of Economic Theory.”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6. 317-44
- _____ (1999). *On Ethics and Economics*. 박순성·강신욱 공역. 『윤리학과 경제학』. 서울: 한울아카데미.
- Smith, Adam (2009).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박세인·민경국 공역. 『도덕감정론』. 서울: 비봉출판사.
- Spier, J. M. (1979).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Philosophy*. 문석호 역. 『기독교 철학 개론』.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 Wolterstorff, Nicholas (2004). *Educating for Shalom*.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ABSTRACT

A Study on the Root Cause of Missing Ethical Issues in Mainstream Economics

Jong-Chul Rhee(Handong Global University)

In the wake of recent financial crisis, it's recognized again that there exists an incongruence between the theories of mainstream economics and the real world. This disparity is mainly due to the fact that the main stream economics fundamentally tends not to focus on describing and explaining actual economies, but instead on describing an ideal type world. This ideal type world is composed of 'Economic Man', 'Perfect Rationality', 'Perfectly Competitive Market.' In this world, a unique norm is derived and exists, that is, economic efficiency (in Pareto sense, allocative efficiency or Pareto optimality). The ideal type world, if it is not formed based on the actual world, epistemically turns into ideal world which itself manifests a unique norm. So, it is not ironical that the pursuit of ideal world leads to a disconnection from the real world, and result in missing ethical issues as well in mainstream economics. As a matter of fact, missing ethical issues reflects the nature of mainstream economics that is far from the real world which sometimes becomes the world of the madding crowd partly and indirectly supported by the economist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gure out the root cause of the phenomena of dominating efficiency issues and missing ethical issues in the field of mainstream economics. Ideologically, the main economics has rooted in utilitarianism which took over the ideology from ontological naturalism. In fact, ideal type of 'Economic Man' came from utilitarianism and the core theoretical model of economics, the utility maximization model, is associated with the Principle of Utility, the core of thoughts of utilitarianism. In this paper, I demonstrated that

economics associated utilitarianism did necessarily reduce ethical behavior to economic rationality, and adopt efficiency as the ultimate value and social norm. This necessity follows from the nature of the 'Economic Man' and the framework of the ideal type world. And the fundamental source for this necessity is the oneness proposition in utilitarianism: "pleasure is in itself a good... the only good", which is written by Jeremy Bentham.

Key Words: 'Economic Man', utilitarianism, ontological naturalism, ideal type world, 'Principle of Utility', economic rationality, economic efficiency

